

2013년도 부산시설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요 약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13.(월) ~ 5. 24.(금) ▶ 10일간
- 감사반 : 감사담당관 등 14명
- 감사범위 : 2010. 6. 1. 이후 추진 집행사무 전반

□ 감사결과

- 행정상 조치 : 37건(시정 17, 주의 20)
 - 분 처 분 : 19건(시정 5, 주의 14)
 - 현지처리 : 18건(시정 12, 주의 6)
- 재정상 조치 : 5건 61,192천원
 - 회수(2) 20,957천원, 감액(1) 4,454천원, 추징(1) 2,340천원, 환부(1) 33,441천원
- 신분상 조치 : 67명(훈계 21, 주의 46), 표창 3명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 개선·권고 4건

※ 직전 감사결과(2010. 5. 26 ~ 6. 9. 시행)

- 행정상 조치 : 41건(시정 18, 주의 23)
- 재정상 조치 : 7건 905,325천원 (회수 33,626, 감액 103,086, 기타 768,631)
- 신분상 조치 : 84명(경징계 3, 훈계 25, 주의 56), 표창 6명

목 차

| | |
|-------------------|----|
| I. 감사개요 및 결과 | 1 |
| II. 종합평가 | 2 |
| III. 주요 지적사례 | 3 |
| IV.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결과 | 12 |
| V.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 14 |
| VI. 조치계획 | 19 |

2013년도 부산시설공단 종합감사 결과보고

I 감사개요 및 결과

□ 감사개요

- 감사기간 : 2013. 5. 13.(월) ~ 5. 24.(금) ▶ 10일간
 - 시민감사 요망접수 : 4. 22.(월) ~ 5. 3.(수) ▶ 10일간
 - 외부전문가 참여 : 5. 13.(월) ~ 5. 17.(금) ▶ 5일간
- 대상기관 : 부산시설공단
- 감사반 : 감사담당관 등 14명
- 감사범위 : 2010. 6. 1. 이후 추진한 집행사무 전반
 - ※ 이전 종합감사 실시 : 2010. 5. 26. ~ 6. 9. ▶ 10일간

□ 감사결과

○ 지적사항 총괄

| 구분 | 행정상 (건) | | | | 재정상 (건/천원) | | | | | 신분상(명) | | | |
|------|---------|----|----|----|--------------|--------------|-------------|-------------|--------------|--------|----|------------|----|
| | 계 | 시정 | 주의 | 개선 | 계 | 회수 | 감액 | 추징 | 환부 | 계 | 징계 | 경고 (훈계) | 주의 |
| 계 | 37 | 17 | 20 | | 5/ 61,192 | 2/ 20,957 | 1/ 4,454 | 1/ 2,340 | 1/ 33,441 | 67 | | 21 | 46 |
| 분처분 | 19 | 5 | 14 | | 1/ 33,441 | | | | 1/ 33,441 | 67 | | 21 | 46 |
| 현지처리 | 18 | 12 | 6 | | 4/ 27,751 | 2/ 20,957 | 1/ 4,454 | 1/ 2,340 | | | | | |

- 외부전문가 개선·권고 4건, 수범사례 3건, 제도개선 2건

- 부산시설공단은 1992. 2. 주차장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주차관리공단으로 출범하여 1998. 1. 시설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공원·유원지, 주요 도로, 영락공원, 광안대로, 시민회관, 자갈치시장 등을 관리하였고, 2008. 3. 이후 한마음스포츠센터, 추모공원, 남항대교, 남포·광복지하도상가, 터널 7개소 등을 신규 수탁·관리하는 등 업무영역을 다양화 하면서 시민 편의 제공 및 복리를 위하여 부산시의 주요 공공 시설물을 관리·운영하고 있는 공기업임.
- 부산시설공단은 “도시의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시설관리 전문 공기업”이라는 경영비전과 “고객우선, 안전추구, 효율중시, 변화선도, 화합도모”의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2012년도 안전행정부 주관 경영실적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가”등급을 획득하여 전국 최우수 공기업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으며, 또한, “지방공기업발전유공기관 선정 대통령상 수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기술혁신대상, 부산녹색환경상, 고객만족브랜드대상 획득 등 각계각층으로부터 폭 넓은 인정을 받는 등 공공시설 관리 전문공기업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음.
- 이번 감사결과, 전반적으로 업무처리가 규정에 따라 적법,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직원채용 및 전보시 인사규정 미준수, 특정업체와지속적인 수의계약, 건설·시설개보수 공사 시 회계규정 미준수, 전례답습적인 시설물 관리사례가 다수 적발 된 것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와 신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임.
- 특히, 시민들이 언제든지 즐겨 찾을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물 관리와 안전도시 구현, 예방 위주의 종합적 재난관리시스템과 신속한 응급복구 시스템 운영, 시민편의를 위한 공공서비스 확대에 주력하여 시민중심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할 것임.

III 주요 지적사례

1. 총무·기획 분야

□ 직원채용·전보 시 인사규정 미준수

-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 시행내규」 및 공단 「취업규칙」 등에 따르면, 직원채용을 위한 면접시험에는 외부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켜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직원의 동원근무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연장할 수 있으며, 보직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보할 수 없도록(감사담당부서 직원은 24개월)하고, 상용직원 신규임용 시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두고 업무실적 등을 감안하여 임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총무인사파트에서는 ◇◇업무 수행을 위한 □□□관을 특별임용 방식에 따라 위촉한 후, 2회에 걸친 연임심사 결정과 황령산터널 인수에 따른 업무직 3명의 고용승계 특별임용, 서면지하상가 인수관련 경력직 기업체 직원 4명 특별임용을 위한 면접시험 시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 2010. 2월부터 2013. 3월까지의 기간 중 31명의 4급 이하 직원에 대한 동원근무 명령을 하면서 동원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이 중 8명에 대해서는 임의적으로 동원기간을 연장(1월~4월)하여 근무케 하였으며,
 - 2011. 2월부터 2012. 8월까지의 기간 중에는 4차례에 걸친 직원전보 발령 시 전보제한 규정을 어기고 타부서로 전보인사를 하였고,
 - 또한, 3회에 걸쳐 총무인사파트 등 10명의 상용직원을 신규 채용하여 근무하게 하면서 수습기간을 두지 않고 계속근무토록 하는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음.

□ 퇴직자 인센티브성과급 지급 부적정

- 「부산시설공단 인센티브성과급 운영내규」에 따르면 연도 중 퇴사자는 퇴직시점에 최종 결정된 지급률로 월할 계산하여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되, 지급률이 결정되기 이전에 퇴사하는 자는 전년도 지급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총무인사파트에서는 전년도분의 인센티브성과급에 대해 매년 7월경 전년도 지급률을 적용하여 중간정산(지급)하고, 12월말에 최종정산분을 지급해오고 있으나, 청원경찰, 상용직, 계약직 등 정원외인력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소속직원 중 7월 이후 퇴사한 계약직 등 48명에 대해 인센티브 성과급 잔여금 33,44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음.

□ 징계처분자 급여지급 부적정

- 「부산시설공단 인사규정」에 따르면 ‘정직’ 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중 봉급의 3분의 2를 감액지급하고, 공단 「취업규칙」에는 상용직원의 ‘정직’ 처분 시 경위서를 제출케 하고, 3개월 이내 출근을 정지시키고, 그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총무인사파트에서는 동료직원의 △△△를 무단사용 및 유용하여 2012.00.00.자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은 상용직원에게 대해 징계기간 동안 급여의 3분의 2만을 감액하여 지급함.

2. 예산·회계 분야

□ 업무추진비 예산편성 및 집행 부적정

- 「201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 예산편성은 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의 집행을 억제하여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의하면 업무추진비의 현금지출은 격려금·축의금·조의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고, 공단 「회계규정」에 의하면 지출담당은 지출업무 수행 시 채무의 확정 및 지급기한의 도달, 지출사항의 회계법규 위반여부를 심사한 후, 정당한 채주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 경영지원실에서는 업무추진비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2010년 종합감사에 지적이 되었음에도 업무추진비 예산을 부서 또는 사업단위로 배분하여 편성하지 않고 모두 본사에 편성하여 이사장 등 임원 위주로 집행하면서, 소속 상근직원 격려를 위해 현금을 집행하고, 단순한 행사·회의 등 내부직원 격려를 위해 시책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적정하게 지출(18건 5,900천원)하였고,
- 경조사 발생시 현금지출 업무의 편의를 위해 총무인사파트장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여 일정금액(매월 100~200만원)을 전도금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하고, 현금을 개인명의 통장에 보관하며 경조사비를 처리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하여 지출을 하였음.

□ 시 보조사업비 집행잔액 사용 부적정

-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정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함에도,
- 영락공원사업단에서는 '10년부터 '12년까지 3년간 시로부터 보조사업비로 교부받은 3,290,000천원으로 화장로 개보수 공사를 추진하면서 집행잔액 534,087천원을 반납하지 않고, 시의 사전승인 없이 화장로 내 대차구입, 화장로 유지관리 부품구매, 점검보행로 안전난간 보강공사 등의 명목으로 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하였음.

□ 계약심사 절차 미이행

- 「부산시설공단 감사규정 시행내규」에 따르면 2천만원 이상의 용역, 물품 제조·구매 건에 대해 사업시행부서에서는 공사 및 용역발주, 물품 구매·제조의 발주 때와 공사비 20퍼센트 이상의 설계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감사부서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함에도,
 - 경영지원실 등 3개 부서에서는 2011년도 신규직원 공개채용 위탁 대행용역 등 2개 용역의 발주와 핸드볼선수단 동절기 피복 구입 등 4건의 물품구매·제조 건에 대해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을 초과하였는데도 계약심사를 받지 않았으며,
 - 공원관리사업단 등 2개 부서에서는 중앙공원 경사형 엘리베이터설치 전기공사 등 3개 공사는 설계변경 금액이 계약금액의 20%이상 증가하는데도 계약심사를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하였음.

3. 구매·물품 분야

□ 장례식장 식자재 구매계약 부적정

-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영락공원 장례식장 운영을 위한 식자재(쌀, 떡, 축산물, 과일)를 구매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다목.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법률에서 정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과 단가수의계약을 체결 (2001년 장례식장 직영 시부터 2013년 현재까지)하여 물품을 공급 받아 왔으나,
 - 위 식자재들은 ◇◇◇◇이 타 업체로부터 공급받아 납품해온 물품으로 직접 생산물품이 아니기에 수의계약 대상이 아니므로 단가입찰을 실시하여 구매하여야 함에도, ◇◇◇◇에 물품공급에 대한 수수료료를 지급하는 형태의 단가수의계약을 체결하였음.

□ 조경수목·초화 등 구매업무 추진 부적정

-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시행내규」에는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에도,
 - 재무파트 등 16개 부서에서는 공단 재직 후 퇴직한 직원이 설립한 조경회사로부터 2010. 6월부터 2013. 5월까지 250,169천원의 수목·초화 등을 수의계약을 통해 구매하는 등 행동강령을 위반하였음.

□ 지역업체 생산 물품·자재 구매 소홀

- 「효율적인 회계제도 운영을 통한 지역업체 지원확대 방안」(회계재산 담당관- 6457호(2010. 3. 8) 및 「지역경제 마인드 제고, BUY-BUSAN 운동 적극 추진」(시장지시 사항 제44호, 2011.7.5) 등에 따라 각종 공사 및 시설물 유지에 소요되는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지역 내 생산 및 대체 납품 가능 여부 등을 우선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야 함에도,
 - 공원관리사업단 등 3개 부서에서는 어린이대공원 가족친수공간 정비공사 등 16건의 공사에서 해당 물품·자재를 생산하는 지역 내의 업체가 있음에도 대체납품 가능 여부 등 비교검토 없이 지역 외 제품을 구매하여 사용하였음.

4. 공사 및 시설관리 분야

□ 장애인 보행로 설치공사 부적정

- 「건설기술관리법」 및 「건설공사 감독 및 공사관리관 업무지침(국토해양부 훈령 제920호)」 등에 따르면, 공사감독관은 설계도면,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설계도서대로 목적물이 시공되도록 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 영락공원사업단에서는 “제3영락원 장애인 보행로 설치공사”를 시행하면서 보행로(데크)의 기초 콘크리트 공사를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아 기초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 저하를 초래하였고, 공사감독자는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자가 설계 도서에 따라 성실히 공토록 감독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

□ 광안대로 조명설비공사 하자검사 업무 소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연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하여야 함에도,
- 광안대로사업단에서는 “2011년 광안대로 조명설비 부분보수공사”를 시행하면서 재무회계파트 계약담당자로부터 시설공사에 대하여 연2회 정기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통보를 받았음에도 정기하자검사를 이행하지 않았음.

□ 시민회관 카페테리아 운영 등 소홀

- 시민회관에서 2005. 7월부터 직영 중인 시민회관 카페테리아(일반 음식점, 좌석수 80, 면적 234㎡)의 식자재 공급에 따른 판매내역 중 돈까스의 경우 2011년도에 17,072인분을 구매하였으나, 판매한 것은 15,546인분이며, 2012년에는 13,862인분을 구매하였으나 판매한 것은 12,121인분이었으며,
- 또한, 카페테리아 수익 및 지출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 식음료 판매수익이 총 453,843,430원, 지출은 인건비 포함하여 총 424,831,159원으로서 순수입이 29,012,271원인데, 2012년도에는 8,696,030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는데도 물품구입·판매관리 등 경영합리화 방안을 강구하지 않은 채 카페테리아 운영·관리를 소홀히 함.

□ 건축물 무단용도변경 사용

- 「건축법」 제35조(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따르면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령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법 제19조(용도변경)에 따라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 시민회관에서는 지하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당 72㎡)을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분장실)로, 지상1층 문화 및 집회시설(대강당 로비 약 21㎡, 소강당 로비 약 18㎡)를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으로 무단 용도변경하여 사용하고 있음.

□ 한마음 스포츠센터 운영 부적정

- 한마음스포츠센터는 사회복지시설로 건립된 건축물이며, 수영장 등은 「건축법 시행령」 및 「장애인복지법」 등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중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용도로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건축한 것이므로,
 - 장애인들만 이용하거나, 장애인 회원 우선 접수 등 장애인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는데도 이러한 제도적 장치 없이 운영함.

5. 공원 등 기타 분야

□ 태종대 황칠나무 식재사업 추진 부적정

- 나무식재 사업 시 일반적인 입찰방식은 총액입찰 방식으로 구매하여 식재 이후 자연고사 등 발생시에 하자책임이 명확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분리발주 시에는 하자책임이 상호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 2012년도 1차 및 2차 사업의 구매계약 시 시공과 자재구매를 분리 발주하여 시행하여 자연고사 등의 하자 발생에도 불구하고,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었으며,
- 상기 사업의 조경공사 시방서에 의하면, 나무에 대한 산지, 규격, 수량 등 관련사항이 명기된 「재료조달계획서」를 해당공사 착공 전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검사는 현장반입 전 재배지에서의 사전검사와 지정장소 반입 후 검사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수종, 품질 및 규격 등은 현장도착 즉시 시방서 조건에 충족되면 납품승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 2012년도 1차사업 황칠나무 재배지 현장(보성, 해남, 완도 등) 확인 시 부적합하다고 결과보고를 하였으나, 이후 적합규격의 수목에 대한 현장 재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품업체에서 임의로 구매하여 식재현장에 반입한 수목에 대하여 납품승인을 하였으며,
- 또한, 2012년도 2차사업 지급자재(황칠나무) 낙찰자가 결정되어 시방서 규정에 따라 현장 확인을 실시하여야 하나, 1차 때와 동일하게 현장검수를 하지 않은 채, 납품업체에서 임의로 식재현장에 반입한 수목에 대하여 납품승인을 하는 등 황칠나무 식재 현황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당초 설계된 수량보다 108본이 미 식재되어 있음.

□ 광안대로 통행료 미납자 관리 부적정

- 광안대로 하이패스 개통 후 통행료 미납차량이 급증하였고, 최근에는 통행료 미납이 1일 평균 300여건이 발생하고 있으며,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하여 공단에서는 「광안대로요금소 운영내규」에 따라 미납안내문을 차량소유자에게 발송하고,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가통행료(통행료의 10배)를 합산한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후 지정기일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재산 및 차량압류 등 행정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광안대로사업단에서는 소액의 통행료(1,000원)를 징수하기 위하여 여러 단계를 거치다 보니 예산 및 인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으며, 또한, 상습 미납차량에 대하여는 차량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압류하는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통행료 미납행위를 근절시켜야 함에도 통행료 미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소홀히 하고 있음.

□ 영락공원 봉안당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조치 미이행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부산광역시 장사에 관한 조례」 등에 따르면 공설봉안당의 사용기간은 15년으로 하되, 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면 한번에 5년씩 3회에 한정하여 연장하여 최장 30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을 연장하려면 그 기간이 끝나기 60일 전에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에도,
- 영락공원사업단에서는 '10.3월부터 사용기간이 만료('95. 3월부터 15년 경과)된 봉안함에 대해 '09.10월부터 '11.12월까지 사전 안내 우편물 발송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12. 1월부터는 안내문 발송을 중단하고, 대신 봉안함 전면에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안내범위가 방문자로 한정되었으며, 기간만료 봉안함 10,928기 중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2,524기의 봉안함에 대한 서면 통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료(151,440천원) 미징수 등 봉안당 사용기간 만료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음.

IV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결과

□ 근 거

-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5조(감사반 편성 등)

□ 개 요

- 참여기간 : 2013. 5. 13.(월) ~ 5. 20.(월) ▶기간중 5일간
- 전 문 가 : 구조안전기술사 ○○○
- 감사분야 : 부산시설공단 광안대로의 시설구조분야
 - 교량·터널·지하차도 구조안전 관리 실태확인
 - 시설물 적정관리와 개선방안 점검
 - 시설물 유지보수(하자기간 내·외) 실태확인

□ 참여결과 : 개선·권고 사항 ▷ 4건

Ⅹ 개선사항(1건)

【점검대상】 : 광안대로를 중심으로 한 남항대교 및 센텀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업무에 대한 정밀점검

【문제점】

- ① 자체 정밀점검 시 참여기술자 인원 및 점검기간 검토 필요하고, 정밀점검 보고서가 대상시설물별 별도 작성되지 아니함.
- ②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 신규손상, 기존손상 보수 여부가 구분되어 있지 않고 탄산화(중성화)시험을 정기점검에도 실시하고 있음.
- ③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내용 중 외관조사 결과 균열을 시공초기의 수화열, 건조수축 내·외부온도차 등에 의해 발생된 원인으로 되어 있으나 정밀안전진단 후 균열하자보수를 하는 것으로 보아 균열 하자 보수 시기가 늦음.

【개선의견】

- ① 정밀점검 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 의한 기술인력 및 정밀점검 기간 조정필요하고, 대상시설물은 1종 시설물로 정밀 점검보고서 작성 시 대상시설물별로 각각 작성하여 관리.
- ②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 손상(신규·기존·보수)을 구분하여 작성하고, 탄산화(중성화)시험은 시험과정에서 대상시설물에 결함발생요인이 있으므로 정밀점검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권장.
- ③ 대상시설물 균열원인은 대부분 시공단계 콘크리트 수화열, 건조 수축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것이나, 입지조건(해상)과 특수교량 임을 감안, 중·장기 유지관리 계획이 필요함.

㉠ 권고사항(3건)

- ① 광안대교는 부산을 상징하는 특수교량인 점을 감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전점검기술 전문인력의 보직이동을 최소화하여 점검인력의 전문화가 필요하며, 또한, 안전점검 책임기술자에 대한 조건(관련 기술사 자격증 보유자)을 갖춘 적정 인원을 통한 특수교량 관리를 권장.
- ② 시설물 점검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 등에서 주관하여 실시하고 있는 점검자 양성교육 등을 통하여 점검 스킬 향상 등 최신 시설물 유지관리기법 습득이 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
- ③ 시설물 안전점검과 진단결과 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구성·운영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학계 관계자이므로 경험이 풍부한 실무 관계자의 추가 참여로 시설물 평가의 신뢰성 확보가 필요하며, 광안대교에 실시간 확인 계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계측 데이터의 축적 및 결과분석을 실시하여 정기적인 안전성 확보 및 외부전문가와 합동점검실시로 교량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권고.

V 수범사례 및 개선사항

【수범사례 3건】

1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공원 산불지킴이 구축

□ 추진배경

- 공원 내 환경자원을 보호하고 등산로 등 산림자원 감시 강화
- 공원을 찾는 등산객들에게 산불방지를 위한 계도 및 홍보

□ 추진내용

- 등산로 및 취약지구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자동 안내방송 운영
- 폐휴대폰을 통신모뎀 및 영상카메라로 활용하여 자원 재활용

□ 추진성과

- 설치장소 : 어린이대공원 백양산, 중앙공원 엄광산 일대
- 구축기간 : 2012. 12. ~ 2013. 4.
- 주요내용 : 국내최초 등산로 정상(백양산)에 산불지킴이 시스템 설치
- 언론취재 : SBS 뉴스, KBS 라디오 인터뷰, 주요 일간지보도 등
- 사진자료

| ① 백양산 정상설치 | ② 등산로 입구 설치 | ③ 엄광산 정상 설치 | ④ 스마트폰 영상확인 |
|---|---|--|---|
|  |  |  |  |

□ 기대효과

- 취약지구에 대한 효과적인 산불 감시 강화로 업무 효율화 도모
-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으로 쾌적하고 청결한 공원 환경 조성

수범자 : 창의성과파트 업무8급 ○○○

2 커피코너 개설 운영을 통한 세입 증대

□ 추진배경

- 영락공원은 일일 평균 4천 여명이 방문하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장사 시설로 유족 대합실은 영락공원 최대 집객 장소임에도 서비스 시설 절대 부족(음료 자판기 3대, 의자, TV 등)
- 화장대기 고객의 경우 방문 체류기간이 짧아 간편식 서비스 선호

□ 추진내용

- 화장동 유족대기실 내 커피코너 개설을 통해 시설을 이용하는 장시간 대기하는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세입 증대
 - 화장접수처, 분향실, 유족대기실 등 시설 개선 후에도 기존방식 대로 운영되어온 음료 자판기 등 개선

□ 추진성과

- 화장동 유족대기실 내 커피코너 개설을 통한 세입 증대
- 2012년도 순이익 104,378천원 신규 세입 창출
 - 커피코너 운영 만족도 조사결과 : 만족 58.9%, 불만 8.7%

□ 기대효과

- 향후 5년간 550,716천원의 신규 세입 창출 기대
- 모범적인 장사시설 운영사례로 울산 하늘공원 등 타 장사시설의 벤치마킹 대상

수범자 : 장사운영파트 장례지도5급 ○○○

3 강교도장 보수 전담반 운영

□ 추진배경

- 공용기간 경과로 인한 부분 발청으로 보수도장 필요
- 도장 품질확보 및 체계적인 현장관리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 난이도가 비교적 낮은 부분에 대한 자체 보수 시행

□ 추진내용(성과)

- 現 기동보수반원 활용, 외부 전문기관 위탁교육 시행
 - 구성인원 : 4명(반장 1명, 작업원 3명)
 - 도로시설물 유지보수와 환경정비 등 기존업무와 병행
- 도장관련 전문자격 취득
 - 취득자격 : KACE 도장감리원
 - ※ 도로교표준시방서 및 고속도로공사 전문시방서 도장검사자 자격 :
NACE, KACE, FROSIO 등에서 인정한 고급이상의 자격자
 - 교육기관 : (사)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 교육추진사항 : 총 4회 (2011. 12. ~ 2012. 04.)
 - 자격취득사항 : 자격 취득자(도장감리원) 총 6명(고급 1명, 초급 5명)

□ 기대효과

- 국부 손상부위에 대한 자체인력 보수로 예산절감 효과
 - 방호책 자체보수로 도급공사 대비 연간 약 67,000천원 절감

수범자 : 교량시설파트 토목6급 ○○○○

【제도개선 2건】

1 화장 운영시간 개선 (장사관리)

운영실태

- 부산 전국 최고의 화장율(85.8%) 등 화장수요 증가
- 부산 시민 원정 화장 등 불편 해소를 위해 화장 증대 필요

문제점(현실태)

- 부산 시민 유족들이 선호하는 오전 시간대에 화장을 못해 부득이 오후 화장 시행하는 사례 발생
 - 일 평균 발생 건수 : 8건 ▶ 13:00(7회차) 4건, 13:40(8회차)
- 부산 시민 타시도 원정 화장하는 사례 발생, 시민 불편 호소
 - ※ 타시도 원정 화장 사유
 - 고인의 장지가 원거리인 경우, 오전 시간대 화장예약 불가시

개선사항

- 화장 운영 시간 조정 : 기존 08:00~17:00 → 변경 07:00~16:00
- 부산시민 우선 예약 증회 : 1 ~ 6회차 → 1 ~ 7회차
- 8회차 일반화장 예약 확대 : 일반·개장·사산아 → 일반

기대효과

- 유족이 선호하는 오전 화장 확대, 고객서비스 향상
- 오전 화장수용 증가(일35건 → 49건)

2

「친환경 새 조화」 사용 의무화

□ 운영실태

- 2012. 4월부터 영락공원 내 「친환경 새 조화」 사용은 정착하였으나, 대다수 장례식장은 아직도 종전의 크고 무거운 3단 인조조화 사용
 - 실용적이고 친환경적인 새 조화 정착을 위한 공동노력 시급

□ 문제점

- 장례식장에서 새 조화 사용을 강제할 근거와 여건 미흡
 - 새 조화 사용 의무화 관련 행정적 지침이나 규제 미비
- 새 조화 사용 및 보급 관련 부산시 차원의 주관부서 미지정
 - 새 조화 파급 및 확산을 주도할 구심점 및 추진동력 부재

□ 개선대책

- 새 조화 의무사용 및 보급을 위한 이행규정 등 근거 마련
 - 조례, 규칙 또는 지침 제정, 주요시책업무 지정 등
- 화훼농가, 도매상가, 공공장례식장, 부산시 포함 새로운 협의체 구축
 - 새 조화 보급·설치·보급, 부산시 행정지원 및 지도·감독 등

□ 기대효과

- 새 조화 보급 확대를 통한 조화 재사용 예방 및 화훼농가 보호
- 폐 조화 쓰레기 감축을 통한 친환경 녹색성장 확산

VI

조치계획

□ 행정상 조치

○ 감사에 지적된 37건에 대하여는

- 본처분 19건 중, 시정이 가능한 건은 지체 없이 조치토록 하고, 시정 불가능한 건은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 촉구
- 내용이 경미한 18건은 「부산광역시 행정감사 규칙」 제10조(감사의 현지처리)에 따라 현지조치 완료

▶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는 감사결과 통보일로부터 2개월 이내 제출

○ 외부전문가 감사참여 결과 개선·권고사항은

-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 시 결과 제출

○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하여는

- 전 직원들에게 알려 업무에 참고하도록 조치

□ 재정상 조치

○ 재정상 조치 5건 61,192천원 대하여는 회수 등 조치

- 회수(2건) 20,957천원 추징(1건) 2,340천원 감액(1건) 4,454천원 환부(1건) 33,441천원

□ 신분상 조치

○ 문책 대상자 67명(훈계 21, 주의 46)은 문책 조치

- 훈계대상자 : 이사장이 훈계장 전달, 직무교육 실시
- 주의대상자 : 금회에 한하여 부서장이 주의 촉구

○ 수범직원 3명에 대하여는 기관별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후, 시장 표창 추천하되, 경력미달·기 표창수여 등으로 시장표창 추천이 어려울 때에는 자체격려 방안 강구 시행